

이사회 운영 규정

제정 2006. 04. 14. 규정 제3호
개정 2008. 03. 18. 규정 제25호
전문개정 2009. 07. 13. 규정 제39호
개정 2020. 05. 13. 규정 제20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고,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그 적용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.

제3조(이사회 운영) ①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“별지 제1호 서식”에 의한 이사회 소집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 의결사항을 부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“별지 제2호 서식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긴급 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“별지 제3호 서식”에 의하여 정관 제16조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제4조(이사회 사무관리) ① 이사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진흥원 이사회 업무 부서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
2.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
3.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의사진행) ①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의안의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의결 안건 중 일부를 이사회 동의 얻어 진흥원 운영 위원회에 위임하여 상세한 검토와 함께 의결하게 할 수 있다.

- 제6조(수당·활동비·여비지급 등)** ① 이사회에 참여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출장, 감사 등 진흥원 업무에 따른 비용발생 시 진흥원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20. 05. 13.>
- ③ 기타 이사회 임원에 대한 수당, 활동비, 여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(2006. 04. 14. 규정 제3호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8. 03. 18. 규정 제25호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9. 07. 13. 규정 제39호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05. 13. 규정 제209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